

《2023. 7월 2차》

청렴메아리

공정하고 청렴한 수원특례시 만들기
시민 여러분과 공직자의 **관심과 참여**가 매우 중요합니다.



「공공재정환수법」 부정청구 사례 청렴수원

도입 배경

○ 관련내용

- 공공재정(보조금, 보상금, 출연금 등)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·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

○ 부정청구 유형

- (허위청구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
- (과다청구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
- (목적외사용) 법령·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
- (오지급)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

○ 부정수익자 제재

- 부정이익 환수(이자포함), 제재부가금(최대 5배),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

부정청구 사례

- 대표는 유급휴직대상인 직원들을 근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1억 5,466만원 부정수급
- 대표는 휴업대상자들의 출퇴근 기록을 조작하여 휴업계획을 이행한 것처럼 꾸며서 고용 유지지원금 1억 3,436만원 부정수급
- 기초생활수급자 3명은 매월 발생하는 근로소득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득을 숨기고 기초생활보장급여 1억9백만원 부정수급
- 기초생활수급자 A씨는 마트에서 받은 근로소득 금액을 축소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기초 생활보장급여 1천6백만원 부정수급
- 기초생활수급자 나수급씨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있고 그 배우자에게 상당한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기초생활보장급여 4천8백만원 부정수급

부조리
신고

- ♣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(시 홈페이지 하단배너  클릭)
- ♣ 감사관 핫라인(☎ 031-221-3650), 부패·청탁금지법 위반신고(국번없이 1398)